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59
----------	-------

발의연월일 : 2026. 1. 9.

발 의 자 : 김위상·김선교·이달희
진종오·우재준·이인선
구자근·김재섭·추경호
신성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는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극한의 고열·한랭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실질적 건강장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정의나 보호·지원, 실태조사 규정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도 계획 등에 보호·지원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고, 국가로 하여금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및 피해와 적응 역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신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취약계층”을 “산업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 영향에 취약한 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계층

나. 유해광선·고열·한랭 등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 영향에 취약한 계층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과급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록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역량 제고 대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역량 제고 대책에
관한 사항

제15조제4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
부장관”으로 한다.

제6장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① 국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제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및 피해와 적응 역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주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정부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0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기본계획이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1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시·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도계획이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계획의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시·군·구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u>취약계층</u> 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3. ----- ----- ----- ----- ----- ----- ----- ----- <u>산업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u> ----- -----.
14. ~ 17. (생략)	14. ~ 17. (현행과 같음)
<신설>	18.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 영향에 취약한 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계층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 8.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⑨ (생략)

<신설>

나. 유해광선·고열·한랭 등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 영향에 취약한 계층

제3조(기본원칙)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 8.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 11. (생략) ③ ~ ⑥ (생략)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9. (생략) ③ ~ ⑦ (생략)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① ~ ③ (생략)	<u>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역량 제고 대책에 관한 사항</u> 6. ~ 11.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역량 제고 대책에 관한 사항</u> 4. ~ 9.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생략)

⑤ ~ ⑨ (생략)

<신설>

④ -----

-----.

1. -----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2.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① 국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제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및 피해와 적응 역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주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u>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u>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 <u>기후위기 취약계층</u>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